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과장 김철욱(6536)/ E-mail: leokma0817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5-08745호

시행일자 2021. 10. 2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마약성 진통제 ‘펜타닐(패취제)’ 처방 시 대의원 주의사항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: 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-1873 (2021.04.22.)

나. 대의협 제625-799호(2021.04.23.)

3. 위 관련근거에 의거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‘펜타닐(패취제)’에 대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한바 있으며, 이와 관련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‘펜타닐(패취제)’ 오남용 및 불법유통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4.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‘펜타닐(패취제)’ 처방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준수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, 붙임 안내서를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‘펜타닐(패취제)’ 처방 시 주의사항 (세부내용: 붙임 참조)

-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여서는 안됨.
-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여서는 안됨.
- 만성통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(인지행동 치료, 물리치료 등)를 우선해야 하며, 마약성 진통제를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.(특히, 펜타닐 패취제는 오남용 우려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투여를 권장하지 않음)
- 비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한 경미한 통증이나, 수시 처방이 필요한 간헐적인 통증의 조절에 사용하여서는 안됨.

-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만성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함.

○ 펜타닐 패취제 1매를 3일(72시간) 사용함

※ 붙임의 ‘펜타닐(패취제)’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방하시기 바라며,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처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(패취제)안전사용 안내서(의사용) 1부.
2.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(패취제)안전사용 안내서(환자용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